

●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-36호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0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통개항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

□ 출입통제구역 지정

- 지정사유: 고립·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
- 소재지: 통개항(제비랭이, 황새바위 등) 인근 해역(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)
- 지정일: 2025. 12. 1.
- 통제기간: 2025. 12. 1. ~ 지정 해제 시까지
- 통제시간: 야간(일몰 후 30분~일출 전 30분)
- 대상: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자(선박으로 통항하는 경우 제외)
- 법적제재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1차: 20만원, 2차: 50만원, 3차: 100만원)
- 범위

가: 36°44'14.42"N 126°9' 5.71"E

나: 36°44'14.42"N 126°9'25.81"E

다: 36°43'28.69"N 126°9'25.81"E

라: 36°43' 1.70"N 126°8'43.99"E

마: 36°43'19.48"N 126°8'17.59"E

위 각 호(가~마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



※ 상세설명

- 가: 슬립웨이 콘크리트 포장부
- 나: 기준점 '가'를 기준으로 정동 방향으로 500m 지점
- 다: 기준점 '나'를 기준으로 정남 방향으로 1.4km 지점
- 라: 기준점 '다'와 '마'의 교차점
- 마: 제비랭이와 신통개항의 중간 지점 전신주

○ 문의처: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☎041-950-2548)